

현물 기부 절차 및 서식 안내

기부받는 현물(물품)은 본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법정)기부금 용도: 시설, 교육, 장학, 연구)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본교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이며, 본교의 고유목적사업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사업이 해당

1. 수증 부서는 기부자로부터 붙임의 발전기금참여신청서(현물(물품) 기부단가 산정명세 확인서, 장부가액 확인서 포함), 장부가액(또는 시가) 증빙서류, 법인 관련 서류(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령
※ 미술품, 중고물품 등은 수증 부서에서 전문가 감정평가, 잔존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치 평가 필요
2. 대외협력팀 기부 약정 담당자(교내 1244)에게 위의 서류를 송부하여 기금인사 정보 생성 및 확인
3. 물품 수령 후 감사팀에 검수요청 공문(물품 사진, 상기 관련 서류 첨부) 발송
4. 감사팀의 검수 후 검수 완료 공문 수령
5. 소모품이 아닌 기계기구, 집기비품일 경우, 관리팀에 물품등록요청 대내공문 발송(감사팀 검수 완료 공문 및 물품등록요청서(포탈 지식관리 검색) 첨부)
6. '일반행정시스템(GMS) > 발전기금 > 약정관리 > 현물기부내역등록' 메뉴에서 자료입력 후 전자결재 상신(감사팀 검수 완료 공문 등 관련 문서 첨부)
※ 현물기부내역 등록 시 비용(자산)계정 재정팀에 확인 필요
(물품(소모품)인 경우 비용계정, 그 외 자산계정)
※ 본교 고유목적사업과 법인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현물(물품)의 활용 용도를 수증부서에서 담당자 의견에 기재

붙임 : 현물 발전기금참여신청서(현물 기부단가 산정명세 확인서, 장부가액 확인서 포함)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현물기부)

후원자 정보

성명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휴대폰	전화(직장)	E-mail
	실무담당자 부서·직위·성명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개인사업자
본교관계	<input type="checkbox"/>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약정 정보

※ 기부사실 비공개 요청

물품정보			
현물 기부가액	총	원	
후원목적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_____ (서명:)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 give.korea.ac.kr develop@korea.ac.kr Tel 02-3290-1244 Fax 02-953-2325

-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 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계속)

현물(물품) 기부단가 산정명세 확인서

NO	품명	규격(모델)	단가(원)	수량	금액(원)	기부단가 산정기준 (해당란에 v 체크)
1						시가() 장부가액()
2						시가() 장부가액()
3						시가() 장부가액()
4						시가() 장부가액()
5						시가() 장부가액()
6						시가() 장부가액()
7						시가() 장부가액()
총 액						

[현물 기부단가 산정 안내]

1. 현물 기부단가 기준

가. 법인 : 장부가액

나. 개인/개인사업자 :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근거 법령

1)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개인/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2. 제출서류

가. 장부가액 : 장부가액 확인서(본교 양식), 취득증빙, 원가명세서, 회계장부 사본 등

나. 시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다.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증빙 불가 서류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위와 같이 현물(물품) 기부단가 산정명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법인은 법인인감)

고려대학교 귀중

장부가액 확인서

연번	제품	수량 (개)	장부가액 (단가, 원)	기부환산액 (수량*장부가액, 원)	판매가(원) (수량 1개 기준)
1					
2					
3					
4					
5					
6					
7					
합계					

본사는 고려대학교에 기증하는 제품의 장부가액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이에 대한 사실 책임 여부는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기관)명 :

법인

대표자 :

인감(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려대학교 귀중